

1995. 12. 22.

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 충주시포상조례증 개정조례안
- 충주시통 및 반설치조례증 개정조례안
- 충주시리장정원 및 관할구역에 관한조례증 개정조례안
- 충주시시세조례증 개정조례안
- 농공지구 조성사업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증
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개정조례명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제안설명자
충주시포상조례증 개정 조례안	'95.12.11.	'95.12.12.	제11회충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 (1995. 12. 22.)	총무과장
충주시통 및 반설치조례증 개정조례안	"	"	"	시정과장
충주시리장정원 및 관할구역 에 관한 조례증 개정조례안	"	"	"	"
충주시시세조례증 개정 조례안	"	"	"	세정과장
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증 개정조례안	"	"	"	지역경제 과장

2. 제안설명요지

가. 충주시포상조례증 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공적심사위원회가 인사위원회로 대체되고 있어 공적심사 시 불합리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충주시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운영

○ 구성내역

- 위원장 : 부 시 장

- 부위원장 : 총무국장

- 위원(5명) : 기획실장, 사회경제국장, 농정국장, 건설도시국장,
총무과장

나. 충주 서통 및 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공동주택단지 조성과 통반규모가 비대하여 불균형한 면·동의 행정구역을
재조정하여 주민의 불편해소 및 동행정 수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통·반의 증설

- 금가면 : 2개리 16개반

- 용산동 : 2개통 10개반

- 단월동 : 2개반

- 봉방동 : 5개반

다. 충주시리장정원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공군부대내에 공군아파트 신축으로 2개리가 중설됨에 따라 리장정원 및 행정리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금가면 문산리 리장정원 2명 → 4명으로
- 금가면 문산리 관할구역을 신대,문곡 → 신대 1,2,3, 문곡으로 조정

라. 충주시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세조례를 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소득할 주민세율 조정
 - 소득세할, 범인세할, 농지세할세율조정 : 7.5%에서 → 10%로 개정

마. 충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예비비로 사장된 자금을 적정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함.

2) 주요골자

중소기업의 육성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에 한하여 타회계로 전용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가. 충주시포상조례증 개정조례안

- 민주시민 질서상을 비롯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 차원에서 참된 사상을 위하여는 공정하고 면밀한 심사가 요구되므로,
- 인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리함은 불합리한 것으로 분석되어 공적심사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으로 충주시포상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됨.

나. 충주시통 및 반설치조례증 개정조례안

- 공군부대 인근주변 금가면 지역과 용산동, 단월동에 조성된 아파트단지와 규모가 과대한 봉방동 일부반을 중설하는 것으로서,
- 2개리 2개동 33개반을 중설하는 것을 글자로 분통, 분반의 배분은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며, 면·동 행정수행의 여건이나 규모상 부득이한 조치로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적정규모의 행정구역조정을 위하여 제안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다. 충주시리장정원 및 관할구역에 관한조례증 개정조례안

- 통반설치조례 개정과 더불어 행정리의 관할구역 경계를 명확히 함과 리장 정원을 조정하여,
- 주민편의와 원활한 면행정 수행으로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나. 충주시시세조례증 개정조례안

- '95. 12. 6일자 법률 제4995호로 지방세법증 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주민세, 소득세할의 표준세율을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 공히 세액의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10으로 인상 조정됨에 따라,
- 시민에게는 부담이 가중될 것이나 상위법에 근거한 지방세의 보통세증 주민세 소득세할을 2.5% 인상 조정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충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증 개정조례안

- 활용되지 못하는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많은 자금을 기업운영이 어려운 기업체에 운영시설 자금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책으로,
- 동조례 제13조에는 일반회계를 비롯한 타회계 전용을 금지토록 하고 있으나, 단서 조항을 두는 것으로 개정하여 중소기업의 육성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에 한하여 전출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자금사장을 방지하고 적정 활용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가. 충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 [질의요지]
- 농공단지 특별회계 보유자금중 활용되지 못하는 금액은?
 - 중소기업체 자금지원시 농공지구업체와 일반자유입지 업체를 구분 지원하는지 여부와 지원규정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타당하지 않은지?
 - 구조조정자금의 지원 한도액과 자금상환방법의 개선여부는?
 - 전용금지조항에 전용할 수 있는 단서가 있을 경우 적용될 소지가 있지 않은지?

- [답변요지]
-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예비비에 34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활용가능한 25억5천만원만 전출하여 활용할 계획임.
 - 모든 중소기업에 해당되며 자금운영에 대하여는 '96 상반기 중에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개정시 구체적으로 명시하겠습니다.
 - 구조조정자금 지원은 한정된 자금으로 인하여, 1개업체당 1억원정도 지원이 가능하며 도와 협의결과 분할상환등은 어려우며 지원기간 연장을 검토하겠습니다.
 - 금액 및 기간의 한도를 규정하는 것은 특정기업체에 특혜를 주지 않기 위함이며, 조례운영시 점수제로 지원하기 때문에 특정업체에 특혜는 있을 수 없으며, 악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불임

가. 충주시포상조례증 개정조례안

나. 충주시통 및 반설치조례증 개정조례안

다. 충주시리정원 및 관할구역에 관한조례증 개정조례안

라. 충주시시세조례증 개정조례안

마. 충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증 개정조례안

충주시조례 제 호

충주시포상조례증개정조례(안)

충주시포상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1(공적심사위원회) ①충주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및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실, 국장 및 총무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서무 또는 인사계장으로 한다.

④공적심사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각급 기관장, 또는 시의 과장·담당관 및 사업소장, 읍·면·동장은 별지 제 4호 서식에 의하여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포상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표창대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제4항중 '인사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통의 명칭 및 관할구역증 용산동 제22통 다음에 "제23통, 제24통"을, 단월, 풍, 가주동의 풍동 제1통 제4반 다음에 "제5반및제6반"을, 봉방동 제8통 "제3반"을 "제3반"및 "제5반"으로, 제9통"제4반"을 "제4반"및 "제5반"으로, "제10통 제1반"을 "제15통 제6반"으로, 제10통 "제5반"을 "제1반"및 "제5반"으로, 제13통 "제5반"을 "제5반"및 "제6반"으로, 제15통"제4반"을 "제4반"및 "제5반"으로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 또는 조정한다.

[별표2] 리의 반 명칭과 구역증 금가면 문산리 제5반 다음에 "제6반내지 제21반"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시세조례증개정조례(안)

충주시시세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중 "100분의 7.5"를 "100분의 1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 적용예) 제15조의 개정 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징수(신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1994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2.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3.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충주시리장정원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리장정원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 표] 리장의 정원 및 관할구역 문산리의 관할구역(행정리)란중 "신대"를
"신대1, 2, 3"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조례 제 호

충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육성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에 한하여 타회계로 전출 활용할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